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723

발의연월일: 2021. 4. 26.

발 의 자: 김경만 · 김정호 · 김주영

신정훈 · 김병주 · 정필모

황운하 · 민형배 · 이규민

서영석 · 강선우 의원

(1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특허공제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분쟁 및 국내외 출원 등의 비용부담 발생 시 납입 부금의 5배까지 저리로 대여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제사업임.

그런데, 공제사업의 범위가 특허·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 전반임에도 "특허공제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인해 사업범위가 특허로 한정되는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 제50조의4 법조문 제목과 동일하게 "지식재산공제사업"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또한, 상호부조형 정책공제의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위해 재무건전성을 유지하도록 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50조의4, 제50조의5 및 제50조의6).

법률 제 호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4 중 "특허공제사업"을 "지식재산공제사업"으로 한다.

제50조의5의 제목 중 "특허공제사업의"를 "지식재산공제사업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허공제사업을"을 "지식재산 공제사업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특허공제사업"을 각각 "지식재산공제사업"으로 한다.

제50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6(준비금의 적립) ① 지식재산공제사업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결산기마다 장래에 지급할 환급금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 을 계상하고 이를 별도로 적립·운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준비금의 적립·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0조의4(지식재산권 관련 공제	제50조의4(지식재산권 관련 공제
사업의 관리·운영) 특허청장	사업의 관리·운영)
은 산업재산권의 국제출원 비	
용, 국내외 지식재산권 관련 소	
송 비용 등 지식재산권 관련	
비용부담으로 인한 재무적인	
위험을 분산・완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	
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	
른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공제	
사업(이하 " <u>특허공제사업</u> "이라	<u>지식재산공제사업</u>
한다)을 관리 · 운영할 수 있다.	
제50조의5(특허공제사업의 위탁	제50조의5(<u>지식재산공제사업의</u>
및 자금의 조성 등) ① 특허청	위탁 및 자금의 조성 등) ① -
장은 <u>특허공제사업을</u> 효율적으	<u>지식재산공제사업을</u>
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사업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특허공제사업 운영을 위한	② 지식재산공제사업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 4. (생략)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u>특허공제사업</u> 운영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신 설>

_	_	_	_	_	_	_	_	_	_	_	_	_	

- 1. ~ 4. (현행과 같음)
- ③ -----

-----<u>지식재산공제사업</u>--

제50조의6(준비금의 적립) ① 지 식재산공제사업을 위탁받은 기 관 또는 단체는 결산기마다 장 래에 지급할 환급금에 충당하 기 위한 준비금을 계상하고 이 를 별도로 적립·운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준비금의 적 립·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